



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안내

-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‘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’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.
- 시민 등이 신고한 경우도 확인절차를 거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오니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차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
단속대상 및 과태료

<p>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위법 주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차가능 표지 미발급 차량 및 미부착 차량, 기존 구형 표지 사용 차량 - 1면 이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 방해 되는 차량의 침범 및 이중주차 등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과태료 10만원</p>	<p>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2면 이상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, 뒤, 양측면에 주차 (이중주차, 평행주차) - 2면 이상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침범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과태료 50만원</p>
<p>주차가능 표지 부착, 보행 장애인 미탑승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과태료 10만원</p>	<p>장애인자동차표지 양도·대여 또는 부당사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위·변조 주차표지 사용, 표지의 차량번호와 자동차번호판이 불일치하는 경우 등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과태료 200만원</p>

- ✓ 약 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한가요?
➔ **안됩니다.** 일정 시간과 관계없이 주차할 수 없습니다.
- ✓ 노인이나 임산부는 주차할 수 있나요?
➔ **안됩니다.** 장애인을 위한 전용 주차장으로 주차할 수 없습니다.
- ✓ 아파트 등 사유지도 단속구역인가요?
➔ **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단속대상**입니다.
- ✓ 건물관리인 등이 주차를 허락한 경우에는 가능한가요?
➔ **안됩니다.** 법률에서 정한 주차가능 차량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차할 수 없습니다.

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

※ 문의 :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☎ 032-880-7330